

1. 개정 이유

가. 「군위탁생규정」 개정('24.10.29.)*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

* 개정내용 : 군위탁교육의 지급경비 반납대상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함.

나.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대상 및 기준 중 ‘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’*을 구체화하고자 함.

* 「군위탁생규정」 제12조제1항제7호나목 “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” 및 제13조제5항제2호 “지급경비 반납조치 : 제1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가목 중 “수학 기간”은 “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”으로 본다.”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교육의 형태(근무 여부)별 학위취득 상한기간 명시(안 제13조의 2제1항 신설)

1) 근무하지 않고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 내 학위 취득

* 기존 훈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

2) 근무하면서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수료일로부터 2년 내 학위 취득

나.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상한기한 내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지급경비 반납근거 명시(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)

1) 교육수료 후 학위취득 상한기한 내 전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 시 학위취득 여부 확인 및 학위 미취득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

다. 야간취학자의 수학기간 구체화(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)

1) 야간취학자의 수학기간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31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한 최소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으로 함.

2)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기간 초과 시 각 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학위취득 기간등) ①영 제12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“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”이란 근무하지 아니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(학사학위과정은 제외)을 수학하는 사람은 수료일로부터 1년, 근무하면서 전문학사, 학사, 석사과정 및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은 수료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전역시점을 ‘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’으로 본다.

③ 영 제13조제5항제2호의 “수학 기간”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,제3호 및 제4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심의를 통해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국방부령 제0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부칙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에 따라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사람부터 적용하며, 근무하면서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의 경우 2026학년도에 학교에 입학(편입)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13조의2(학위취득 기간등) ①영 제12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“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”이란 근무하지 아니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(학사학위과정은 제외)을 수학하는 사람은 수료일로부터 1년, 근무하면서 전문학사, 학사, 석사과정 및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은 수료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.</u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전역시점을 ‘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’으로 본다.</u> <u>③ 영 제13조제5항제2호의 “수학 기간”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심의를</u>

국방부령 제0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부칙	<u>통해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국방부령 제0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부칙
<신설>	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신설>	제2조(적용례)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에 따라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사람부터 적용하며, 근무하면서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의 경우 2026학년도에 학교에 입학(편입)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